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

(기관명: 경기지방노동위원회)

2019. 3.

고 용 노 동 부
감 사 관 실

【순 서】

Ⅰ. 감사실시 개요 ····· 1

1. 감사대상기관 ····· 1

2. 감사범위 ····· 1

3. 감사기간 및 인원 ····· 1

4. 감사중점 사항 ····· 1

Ⅱ. 감사대상 현황 ····· 2

Ⅲ. 감사결과 ····· 3

1. 총평 ····· 3

2. 지적사항 총괄 ····· 3

3. 분야별 지적사항 ····· 3

Ⅰ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대상기관: 경기지방노동위원회

2. 감사범위: ’16. 4. 9. 이후 노동위원회 업무 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기 간: ’19. 2. 18. ~ 2. 22.(5일간)

○ 인 원: 감사담당관 외 4명

4. 감사중점 사항

〔일반관리 분야〕

○ 직원복무, 회의수당 등 예산집행의 적정여부

○ 위원회 구성, 사건배정의 적정여부 등

〔조정분야〕

○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 적정여부

○ 조정불성립 사업장 사후관리 여부 등

〔심판·차별시정·복수노조분야〕

○ 심판업무 처리 적정여부

○ 근로자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운영 적정여부

○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,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의 적정여부

Ⅱ. 감사대상 현황

○ **(행정대상)** 관할 지역은 경기도 지역 전체(31개 시·군), **사업장 467,058개소**(전국의 24.0%), **근로자 수 4,048,175명**(전국의 23.3%)

○ **(조정업무)** 최근 최저임금 인상, 신규노조 설립 등의 영향으로 **조정사건 접수건이 크게 증가***

- ‘18년 조성성립률(51.0%)은 전년대비(73.1%) 감소

* 처리/조정성립(성립률): ‘16년 78/58(74.4%)→’17년 78/57(73.1%)→’18년 145/74(51.0%)

○ **(심판업무) 심판사건**도 **증가 추세***로, 최근 3년간 접수건이 31.1% 증가

- 화해·취하율(75.2%)는 전국평균(62.9%) 보다 높고, 인정률(29.4%)은 전국 평균(35.5%)보다 낮음

* 접수건수 : ‘16년 2,080건→ ‘17년 2,235건→ ‘18년 2,736건

○ **(차별시정업무) 차별시정사건**도 **증가 추세***이며, ’18년 접수된 19건 중 15건 처리(처리율 78.9%)

- 내역은 인정 2, 기각 1, 조정성립 2, 취하10건

* 접수건수 : ‘16년 9건→ ‘17년 10건→ ‘18년 19건

○ **(복수노조업무)** ‘18년 86건 처리(인정30, 취하43, 화해2 등)하여, ‘17년(139건)에 비해 감소

○ **(직원현황)** 정원 41명/현원 41명(충원률 100%)

○ **(기관평가)** ’18년 위원회 중 2위

Ⅲ. 감사결과

1. 총 평

○ 복무·출장관리 및 체납처분 업무 등이 다소 미흡

○ 조정분야는 조정사건 종료 결과 지방노동관서 통보, 조정불성립 사건 종료 후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

○ 심판분야는 심문일정 및 처리결과 지방관서 통지, 이행강제금 부과,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 고발업무가 다소 미흡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명, 천원)

합 계			변상 (인원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 등)			경고·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사례 (인원)
총 건수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회수·추급	기타						
7	11	60	-	-	5 (60)	1 (60)	4	2 (11)	-	-	-	-	-

3. 분야별 지적사항

1 공무원 근무(유연근무제) 관리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 유연근무제**를 이용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에 **출·퇴근 시간 미등록**(8명)

○ **(조치사항)** 전 직원에 대해 복무관리 **교육 실시** 후 보고

2 외부강의등에 따른 복무관리 소홀(회수)

○ **(위반내용)** 댓가를 받는 외부강의등 출강에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(3명, 6만원)하거나 출장신청없이 외부강의 등에 출강(1명, 2회)

○ **(조치사항)**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회수, 전 직원에 대해 복무관리 **교육 실시** 후 보고

3 체납처분 업무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이행강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재산조회, 압류 등 체납처분 미실시 및 불납결손 대상에 대한 결손처분 미실시 등 체납처분 관련 업무 소홀(6개사)

○ **(조치사항)** 해당 건에 대하여 **체납처분** 절차에 따라 조치

4 노동쟁의 조정사건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조정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지 않고, 조정 불성립 사건 종료 후 결과 처리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소홀(40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** 소홀히 한 **ㅇㅇㅇ 등 8명 '주의'**

5 심판사건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문일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지연통지(4건), 사건처리결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미통보(22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** 소홀히 한 **ㅇㅇㅇ 등 3명 '주의'**

6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구제명령 도과 후 이행여부를 48일 경과하여 확인(1건),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2일 소집 지연(1건), 법정 하한액(부당전직 200만원)보다 미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(1건)

○ **(조치사항)** 향후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**시정** 조치

7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고발업무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업장(11개소)에 대해 구제명령 확정사실을 짧게는 17일, 길게는 296일을 지연하여 통보하는 등 고발 관련 업무 소홀

○ **(조치사항)** 향후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**시정** 조치